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3.6.20)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사항 등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제5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의(안 제4조 제2항)

- 1)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 규정으로 위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

나. 법제5조제4항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의(안 제4조제3항)

- 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2) 종합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

다. 법제6조제4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의(안 제5조제2항)

1)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그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정의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4. ~ 9. 1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형소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p>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생략)

<신설>

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중소기업부는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연 락 처	(044) 204 - 7280